

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- 통상산업부 -

석유정제업자, 수출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보유기준이 현행 총수입량의 45일분에서 내수판매량 60일분 이상으로 개선된다.

또 주유소와 정유사간 직거래가 허용되며 석유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중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.

통상산업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, 시행규칙개정(안)을 입법예고했다.

주요개정(안)을 보면 석유비축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축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 신설된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저장시설등록요건을 석유(원유 및 제품)저장시설 1만㎘이상, 액화석유가스는 3천톤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민간 비축의무 한도량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했다.

또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석유유통구조 (정유사-대리점-주유소 · 일반판매점)를 자율화해 주유소와 정유사간 직거래를 가능토록 하고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공시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했다.

특히 유사회발유를 취급·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위반내용의 공표와 함께 영업정지처분 뿐만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조항을 강화했다.

이밖에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현행 발전용 LNG(액화천연가스) 및 저유황중유외에 액화석유가스(LPG)도 추가했다.

한편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 시행령, 시행규칙개정(안)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,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초 경제장·차관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.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◎ 통상산업부공고 제1996- 105호

석유사업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

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『법제업무운영규정』에
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6년 9월 2일

통상산업부장관

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(안)입법예고

1. 개정사유

석유사업법 전문개정('95. 12. 29. 공포, 법률 제5, 092호)에 맞춰 석유정제업, 석유수출입업,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민간 석유비축수준을 제고하며 석유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, 그간 석유사업법령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석유사업자의 등록요건 설정

- (1) 석유정제업,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 시설 기준을 현재 총수입량 45일분에서 내수 판매량 60일분이상으로 개선하되 석유산업의 특성을 고려, 내수·수출간 과도한 불균형 방지를 위해 석유정제업자는 생산량 45일분이상 기준을 병과하도록 함.
- (2) 석유대리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기준을 일부 완화함.

나. 석유비축제도 개선

- (1) 신설되는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 등록 요건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1만㎘이상,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3천톤 이상으로 규정함.
- (2) 석유민간비축수준의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 의무 한도량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 함.

다. 석유유통구조개선 및 시장질서확립

- (1) 효율적인 석유유통구조 형성의 촉진을 위해 현

행법상의 3단계 유통구조(정유사·대리점·주유소·일반판매소)를 자율화함.

- (2) 새로운 형태의 석유판매업 수요에 부응하여 특수판매소의 법적근거를 신설함.
- (3) 석유사업자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구체화 함.

라. 석유품질관리제도 보완

- (1)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회발유 적발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토록 개정함.
- (2)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를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품질기준을 고시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석유부과금 제도개선

- (1) 일정기준 이하 소액수입부과금의 징수제외 근거를 마련함.
- (2) 발전용 LPG공급의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인정함.

바. 기타사항

- (1) 10만㎘이하의 자기사용 석유수입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함.
- (2) 석유사업자의 조건부 등록시 사업개시 기간 (1~3년)을 설정함.
- (3) 석유정제업 및 수출입업의 저장시설요건 미달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설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(문의처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석유정책과 503-9657)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